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는 경조사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로 20일, 둘 이상 자녀를 출산 시 25일,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(출산)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 범위에서 3회, 다태아는 150일 이내 범위에서 5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업무 특성상 매년 하반기에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

업무가 몰려있어 하반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는 120일 또는 150일 이내에서 분할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- 이에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일수를 반영하고,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 이내 범위 내에서, 5회까지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